

종전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세 형태로 부과, 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목적으로 독립세의 방식으로 전환

○ 과세대상 :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

- **개인지방소득** : 종합소득(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), 퇴직소득, 양도소득
- **법인지방소득** : 각 사업연도소득, 청산소득*,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

*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에 과세

○ 납세의무자

-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(개인 및 법인)

구 분	거주자(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), 내국법인	비거주자, 외국법인
과세범위	국내·외 원천소득	국내 원천소득

○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

- **개인지방소득세** 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(「소득세법」 제5조)
- **법인지방소득세** : 법령·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(「법인세법」 제6조)

※ 1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

○ 과세표준 및 세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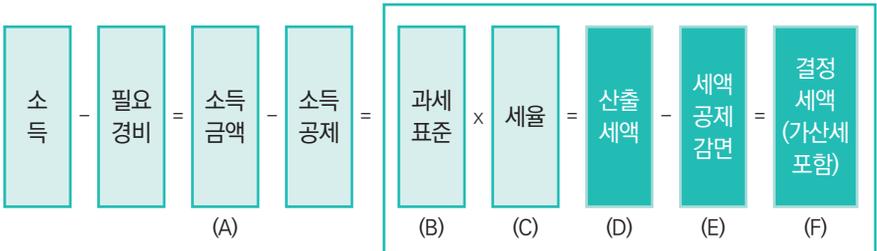
과세표준	소득세·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	
세율 개인분	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0.6%
	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	7만2천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.5%)
	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	58만2천원 + (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.4%)
	8,800만원 ~ 1억5천만원	159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.5%)
	1억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	376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.8%)

	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천746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.2%)
	10억원 초과	3천846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.5%)
법인분	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.0%
	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	2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.0%)
	200억원 초과 ~ 3천억원 이하	3억9천800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.2%)
	3천억원 초과	65억5천800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.5%)
특별징수	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, 법인세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	
탄력세율	자자체별로 세율의 50% 가감 적용	

※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부터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현행 42%에서 45%로 상향 적용

○ 과세구조

|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|



* (~13년) 국세 부가세 형식 : 결정세액(F) × 10% = 지방소득세

* (14년 이후) 독립세 전환 : 과세표준(B) × 지방소득세세율(C) - 공제·감면(E) = 지방소득세

○ 납세지(해당 특·광역시, 시·군)

- (개인)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,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

|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|

구 분	근로소득	이자·배당소득	연금소득	퇴직소득
납세지	근무지	소득 지급지	주소지	근무지

- (법인) 각 사업장 소재지(종업원 수, 건축물 연면적 1:1 기준 안분)
 -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·납부해야 함

|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|

$$\left[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수}} \right) + 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}} \right) \right] \div 2$$

○ 납부(징수)방법

- (신고납부) 관할 지자체에 신고·납부(종합소득은 전국 지자체 가능, 무관할)

개인	근로소득	• 매월 특별징수(원천징수)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
	사업소득 등 종합소득	•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·납부
	양도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예정신고 납부)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• (확정신고 납부)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·납부
법인	사업연도소득 등	•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(법인세는 3개월) 이내 신고·납부
	청산소득	•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·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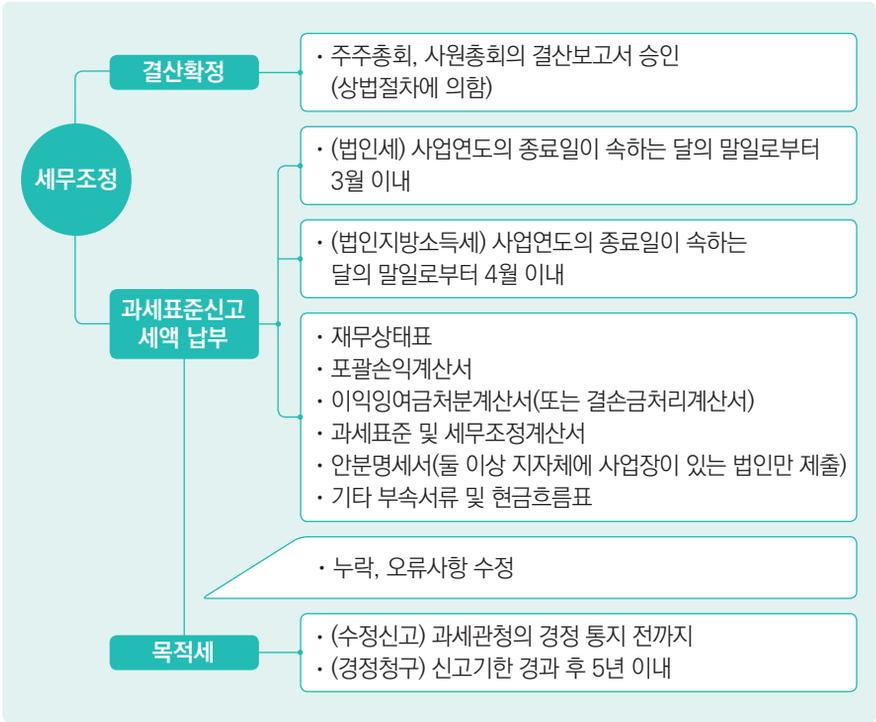
- (특별징수) 원천징수의무자(임금,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)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(기준과 동일)
 -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
- (결정·경정)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·경정·수시부과

※ (2020년 개정)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무관할 신고 점수제도를 도입

※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: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가 시행되는 20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·경정청구 가능

○ 납부체계

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절차 Ⅰ



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(징수) 체계 Ⅰ

